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669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판 결 선 고 2023. 6. 29.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7. 선고 (인천)2020나10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 또는 필수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 기산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와 같이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보충적 해석을 전제로, 원고가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때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공사대금채권의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보충적 해석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